

『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12월 2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빌딩이나 공원 등에 미술장식 등을 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일부 질이 낮은 미술장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· 개선하고,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보호· 육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함.(안 제18조제3항)
- 나.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.(안 제18조제4항)

다.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.(안 제 18조제5항)

라.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.(안 제4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0일까지(2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: 문교사회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.
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(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)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8조(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제40조(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) <u>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</u>

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문화예술진흥법 -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-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- 제3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) -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- 제13조(미술장식의 설치 절차·방법) - 제14조(미술장식심의위원회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문화예술진흥법】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】

제3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) 법 제5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"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, 주차장·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 및 공조실(공조실)의 면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]이 1만 제곱미터(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) 이상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,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11>

1.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

제외한다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
3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·집회장 및 관람장

4. 판매시설

5. 운수시설(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

6. 의료시설 중 병원

7. 업무시설

8. 숙박시설

9. 위락시설

10. 방송통신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② 법 제9조제1항에서 "건축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.

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건축 비용"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)을 말한다. 다만,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미술장식"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회화·조각·공예·사진·서예 등 조형예술물

2. 벽화·분수대·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

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.

제13조(미술장식의 설치 절차·방법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·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에게,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·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미술장식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미술장식의 가격

2. 미술장식의 예술성

3.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

4.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

5.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
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